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관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회 개최 수요에 맞게 공무원 협의체, 비상설회의체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관 정비대상 위원회 관련 대통령령 중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폐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둔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3조의7을 삭제한다.

제3조(「예산성과금 규정」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의 “12명”을 “5명”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 제1항의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로 한다.

제14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5조 제3항의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1개월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5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의7 제1항과 제3항,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장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9조의7 제2항의 “20명 이상 30명”을 “5명 이상 7명”으로, 제7항의 “제6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9조의7 제4항과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7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협의회를 둔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3조의7(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삭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삭제>

<삭제>

<삭제>

<u>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u>	<삭 제>
--	--------------------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2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구성)① ----- ----- <u>5명</u> -----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3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현행과 같음)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 2.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생략 ④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위원장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u>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u>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u>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u>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① ----- -- <u>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이</u> ----- ----- -----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5명 이상 7명</u> ----- ----- ③ ----- ----- <u>관세청 소속 공무원</u> ----- ----- <u>한다.</u> <삭제> <삭제> ④ 삭제.

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삭제>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 략)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
----- 제2항-----

-----.

⑧ 위원장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 제8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세청 소득세제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2571
	(044) 204 - 3262
	(042) 481 - 7865